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심사결과 공개양식

2015년 4월 2일

담당자	연구관	과 장 직무대리
이윷모	이윤숙	이윤숙

1	신청자	(주)한독테바				
_	접수번호	20140210882 (2014.12.02)				
	<u> </u>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Ě		1정(131 mg) 중 비칼루타마이드(별규) 50 mg				
5	효능・효과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유사약물과 병용 혹은 거세수술과 병용하여 진행성 전립샘암의 치료 질병의 진행 위험성이 높은 국소 진행성, 비전이성 전립샘암 환자에서 단독투여 또는 전립샘 근치절제술이나 방사선 요법의 보조요법 				
		1.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유사약물과 병용 혹은 거세수술과 병용시성인 남자 및 고령자 : 비칼루타미드로서 1일 1회 50 mg을 경구투여한다. 이 약은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LHRH) 유사약물을 투여하기최소한 3일 전 혹은 거세 수술과 동시에 복용을 시작한다.				
6	용법 · 용량	2. 질병의 진행 위험성이 높은 국소 진행성, 비전이성 전립샘암 환자에서 단독 투여 또는 전립샘 근치절제술이나 방사선 요법의 보조요법: 성인 남자 및 고령자 : 비칼루타미드로서 1일 1회 150 mg을 경구투여한다. 이 약 150 mg 용법은 최소 2년간, 또는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7	저장방법 및	기밀용기, 30℃이하 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사용(유효)기간	
1 0 (11 32)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2014-178호, 2014.10.31)
⑧ 관련조항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88호, 2014.11.24)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2014-49호, 2014.2.12)
⑩ 제출자료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W 시물자료	(대조약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카소덱스정 (비칼루타마이드))
① 검토결과	적합

[※] 참고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신청

-비칼루타마이드: 1989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신약,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별표 2] 고가의약품 21번

※ 붙임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요약 보고서

<붙임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요약 보고서

<제출자료 목록>

○ 관련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2016-58호, 2016.6.30.)
-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88호, 2014.11.24.)
- 제17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2014-49호, 2014.2.12.)

○ 제출자료 목록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 요약>

○ 심사자의 종합적 검토의견

· 신청품목 ㈜한독테바 테바 비칼루타마이드정 50 밀리그램(비칼루타마이드)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 제2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공고대조약인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과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였으며, 검토결과 적합함.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시험약 테바 비칼루타마이드정 50 밀리그램 (㈜한독테바)과 대조약 카소덱스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을 2×2 교차시험으로 각 1정씩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 시 단회 경구 투여하여 34명의 혈중 비칼루타마이드를 측정한 결과, 비교평가항목치(AUC_t , C_{max})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이 $\log 0.8$ 에서 $\log 1.25$ 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음.

구분		비교평가항목		참고평가항목	
		AUC _{0-672hr} (ng·hr/mL)	C _{max} (ng/mL)	$T_{\text{max}}(hr)$	t _{1/2} (hr)
대조약	카소덱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183.0±42.9	803±157	22.53±13.95	147.98±37.47
시험약	비칼루타마이드정 50 밀리그램 (㈜한독테바)	190.0±47.1	811±141	28.22±18.64	146.14±40.42
90% 신뢰구간* (기준 : log 0.8 ~ log 1.25)		log 0.99~ 1.10	log 0.98~ 1.06	-	-

(평균값±표준편차, n=34)

AUC, :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_{max}: 최고혈중농도

T_{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_{1/2}$: 말단 소실 반감기

*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